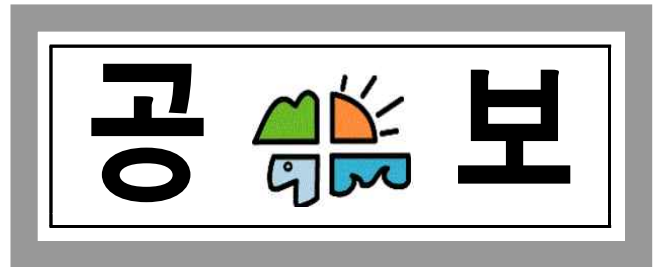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27호 2022년 11월 10일(목)

입법예고

-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3.01.0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및 개정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조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개정 (안 제4조제4항)
- 공유재산의 증감 등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 (안 제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 (안 제12조)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 (안 제16조 등)
-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방법 신설 (안 제29조)
-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조항 추가신설 (안 제33조)
-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정비 (안 제4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속초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속초시청 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639-2273), 팩스(033-639-2396), 이메일(lala8815@korea.kr)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두 번 이상 갱신”을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를 제27조의2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농산물

2.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
3.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1.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2. 「속초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이전기업의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30조(중전의 제29조)제1항 중 “1,000분의50”을 “연 1,0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40”을 “연 1,0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25”를 “연 1,0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1,000분의 15”를 “연 1,000분의 15”로, “1,000분의 10”을 “연 1,0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10”을 “연 1,0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0분 10”을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중전의 제30조)제5항 중 “1000분의 50”을 “연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3항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3항제5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 · 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 수익허가 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3조(중전의 제 3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사용 · 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사용 ·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의 생산 · 전시 · 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전의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을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사용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유건물”을 “사유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사유지가”를 “사유지의 소유자가”로 한다.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사”를 “속초시 청사·종합회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예산·관광·건설도시·산림 업무 분야 담당과장과,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u>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u>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u>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⑬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 8.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3.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4. (생략)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략)

④ -----
한 차례만 연임-----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 8.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
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
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
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
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삭 제>

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
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
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
이 있는 재산(현황과약)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
립·변경)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속
초시의회(이하 “시의회 “라한
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
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
립·변경) ① 법 제10조의2제1
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
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속초시의
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지방자치법」 제55조-----

· 지방자치법 · 제46조에 따른
다.

④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
한다)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
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
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
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
다.

② (생략)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
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
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아무

⑤ 관리계획-----

제16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

----- 무

상 사용허가대상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 기간) -----

----- 법 제

21조-----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사용허가 -----

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
니 된다.

1. ~ 2.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
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
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
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② ~ ③ (생략)

④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 영 제14조제7항에 따
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
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
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

② ----- 사
용허가 -----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 ① -----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6. 사용허가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영 제14조제8항-----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
용허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삭 제>

상 갱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 5.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략)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갱신-----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가 ----

제27조의2(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 제28조와 같음)

<신 설>

제28조(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농산물
2.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
3.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신 설>

제29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1.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2. 「속초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이전기업의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 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 려는 경우
-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 연 1,000
분의 50 -----

② -----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연 1,000분의 40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연 1,000분의 25 -----

1. ~ 2. (현행과 같음)

3 .

연 1,000분의 15

-----연 1,000분의 10

④ -----
----- 연 1,000분의 10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생략)

⑤ 「초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

3. ~ 4. (현행과 같음)

5.-----

-----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⑤ -----

----- 연 1,000분의 10-----
-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연 1000분의 50-----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생략)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 라. (생략)

3. (생략)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생략)

<신설>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

가. (현행과 같음)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
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 ─┐

┌ 해당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
액의 4분의 1

④ -----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
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
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_____ 1
2. 부지의 공용면적

1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
용·공용면적 합계) 1

1 해당부지면적 ×

----- 1

1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
적 1 1

1

_____ 1

⑤ (생 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라 외국
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
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
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
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
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
물의 연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 사용허가하
는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1
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다. ~ 사. (생략)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받은 행정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 사.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
----- 사용허가하는 -----

⑦ -----
사용허가 -----

재산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대부받은 일반재산 사
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
액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
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
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
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
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
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한
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
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제3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허가 및 대부) ① -----

----- 사용허가 및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허가-----

-----.

-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
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속초
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
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
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
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한다.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호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
다.

1. ~ 2. (생략)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
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토지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
라 매각할 수 있다.

④ -----
----- 「속초시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삭 제>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 (현행과 같음)
- 3

-----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
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
함)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가. ~ 나. (생략)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
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
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
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제3호의 매각범위 내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 7. (생략)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서 시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
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
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
고 있는 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9. ~ 10. (생략)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
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5

가. ~ 나. (현행과 같음)

4 .

----- 사유건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
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
함
)-----

-----.

5. ~ 7. (현행과 같음)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
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
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하는 경우

9. ~ 10. (현행과 같음)

1 1 .

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접한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 13. (생략)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 ③ (생략)

----- 사유지의 소유자가

12. ~ 13. (현행과 같음)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속초시
청사·종합회관-----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